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4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서도원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운영과 행정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에 관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안 제1조)

나.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으로 하부조직 조문 삭제(안 제2조)

다. 전문위원 임용 직렬 확대(안 제4조)

라. 상위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5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및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을 “공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비 및 방청, 참관,”을 “경비, 방청·참관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하여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전문위원은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한 제공”을 “대한 자료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소속위원회”를 “그 밖에 소속 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의회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둔다.	<삭 제>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7.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 21. (생 략) 22.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사무국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공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 3. ~ 6. (현행과 같음) 7. -- 경비, 방청·참관 및 ---------- 8. ~ 21. (현행과 같음) 22.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하여 의

	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2. ----------대한 자료 제공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연구단체 지원 7.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 ·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②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

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4. 일부개정·시행)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023.6.13. 일부개정·시행)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 직렬 ·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 직렬 · 직류 · 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데이터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4.1.16. 일부개정, 2024.1.18. 시행)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 도의 의회사무처,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 · 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④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 · 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 · 군 · 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